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19
----------	------

제안연월일 : 2019. 11. 27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11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43번을 심사한 결과 두 안건 중 일부 수정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존재하여 두 안건을 병합심의하여 대안을 제안할 것을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안번호 1111번의 일부 안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장년층과 노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에 있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 규정은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안번호 1143번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기간(2019년 12월 31일까

지)의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111번 개정안 제6조제1항 중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로 개정된 개정안은 현행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그대로 유지함.
-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삭제)
-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의안번호 1143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조례 제7110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대 안 (안)
<p>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 style="margin-left: 20px;">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 style="margin-left: 20px;">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 style="margin-left: 20px;">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부칙 < 제7110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6조의4 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 style="margin-left: 20px;">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 style="margin-left: 20px;">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 style="margin-left: 20px;">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p> <p style="margin-left: 20px;">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부칙 < 제7110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_____ 2020년 12월 31일_____.</p>